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합53943, 2021가합61418(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093,337원 및 그중 269,083,525원에 대하여는 2021. 1. 11.부터, 148,246,036원에 대하여는 2021. 1. 18.부터, 539,128,848원에 대하여는 2021. 2. 22.부터 각 2021. 5. 14.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0. 9. 22. 접수 제19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D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75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C, D는 소장 부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을
각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에서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 1) 피고 A은 산업용전기용품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 2) 피고 A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이 일부 변경되었다.

보증번호	대출 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 과목	보증기한	보증금액		
E	F은행 G금융센터	2016-04-01	700,000,000	피고 A	피고 B
	H	2017-03-31	560,000,000		
		2018-03-30	504,000,000		
		2020-03-27	408,000,000		
		2020-09-25			
I	J은행 여수지부	2017-04-03	630,000,000	피고 A	피고 B
	일반자금대출	2018-04-02	535,500,000		
		2019-04-02			
		2020-03-27			
		2020-03-26			
K	중소기업은행 L지점	2017-05-16	225,000,000	피고 A	피고 B

보증번호	대출 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 과목	보증기한	보증금액		
	중소기업자금 대출	2018-05-15	180,000,000		
		2019-05-15			
		2020-05-15			
		2021-05-14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미이행 주채무의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0.5%를 더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③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 절차 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A은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F은행은 2020. 10. 8.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2020. 9. 12. 발생)를 하였으며, J은행은 2021. 1.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2020. 12. 29. 발생)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을 대신하여 2021. 1. 11. F은행에 319,091,525원, 2021. 1. 18. 중소기업은행에 148,246,036원, 2021. 2. 22. J은행에 539,528,980원을 각 변제하였다.

5)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8%이다.

6) 보증번호 E 중 보증금액 318,207,468원에 대한 위약금은 385,330원(위약금율 2.6%, 대상기간 2020. 12. 25.부터 2021. 1. 10.까지 17일)이다.

7) 원고는 구상금 회수를 위해 집행보전비용으로 249,598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21. 2. 22. 8,000원, 2021. 3. 9. 50,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보증번호 E의 원금에, 2021. 2. 22. 400,132원을 변제받아 보증번호 I의 원금에 각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앞선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등 합계 957,093,337원(= 구상금 1,006,866,541원 - 일부 변제금 50,408,132원 + 위약금 385,330원 + 집행보전 대지급금 249,598원) 및 그중 보증번호 E 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269,083,525원(= 319,091,525원 - 50,008,0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1. 11.부터, 보증번호 K 관련 대위변제금 148,246,03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1. 18.부터, 보증번호 I 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539,128,848원(= 539,528,980원 - 400,13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2. 22.부터 각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5.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김수양, 판사 박건훈

별지 1

1. 여수시 M 전 618㎡, 끝.

별지 2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의 채권자이고, 피고 C은 언니인 피고 B와 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약의의 수익자입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아래 은행들과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구상금채

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 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5 참조).

(단위: 원)

보증번호	보증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과목	보증기한	보증금액		
E	F 은행	2016-04-01	700,000,000	피고	피고 B
	G 금융센터	2017-03-31	560,000,000	주식회사	
	H	2018-03-30	504,000,000	A	
		2020-03-27	408,000,000		
		2020-09-25			
I	J 은행 여수지부	2017-04-03	530,000,000	피고	피고 B
	일반자금대출	2018-04-02		주식회사	
		2019-04-02		A	
		2020-03-27	535,500,000		
		2020-03-25			
K	광소기업은행	2017-05-15	225,000,000	피고	피고 B
	L 지점	2018-05-15		주식회사	
	중소기업자금대출	2019-05-15	180,000,000	A	
		2020-05-15	161,600,000		
		2021-05-14			

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A 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F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피고 주식회사 A 2020. 9. 12.경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

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에 대하여 2020. 9. 12.경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내지 제5호증 참조).

(2) 이에 원고는 2021. 1. 11. F 은행에 319,091,525원을(갑 제5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021. 2. 22. J 은행에 539,528,980원을(갑 제6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021. 1. 18. 중소기업은행에 148,246,036원을(갑 제7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각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다. 원금 일부 회수내역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으로부터 2021. 2. 22. 8,000 원, 2021. 3. 9. 50,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보증번호 E 의 원금에, 2021. 2. 22. 400,132원을 변제받아 보증번호 I 의 원금에 각 충당하였습니다.

라. 미수위약금

피고 주식회사 A 의 보증번호 E 보증금액 318,207,468원에 대한 미수위약금은 385,330원(요율 2.6, 대상기간 2020. 12. 25.부터 2021. 1. 10.까지 17일)입니다.

마. 채권보전비용(대지급금)

원고는 구상금 회수를 위한 주식회사 A 의 채권집행

보전비용으로 249,598원을 대지급하였습니다.

바. 손해금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입니다(갑 제8호증 참조).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093,337원(=대위변제금 1,006,866,541원 - 일부변제금 50,408,132원 + 비수위약금 385,330원 + 대지급금 249,598원)과 그 중 금 269,083,525원에 대하여는 2021. 1. 11.부터, 금 148,246,036원에 대하여는 2021. 1. 18.부터, 금 539,128,848원에 대하여는 2021. 2.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사례행위에 대하여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외 F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20. 9. 12.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에 대하여 2020. 9. 12.경 사진구상권(갑 제1호

중의 1 내지 갑 제3호중의 1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을 취득하였고, 2021. 1. 11. F 은행에 319,091,525원을(갑 제5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021. 2. 22. J 은행에 539,528,980원을(갑 제6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021. 1. 18. 중소기업은행에 148,246,036원을(갑 제7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각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 2020. 9. 12.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후인 2020. 9. 21. 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통신회사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익자인 피고 C은 전등자인 피고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754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라. 그리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자 피고 B은 원고의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마. 피고 B 의 무자력에 관하여

(1) 피고 B 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전남 여수시 N 입야 19,339㎡ 시가 328,763,000원 상당입니다.

(2) 피고 B 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1,006,466,000원

O 217,000원

P 연체금 445,000원

Q 연체금 48,000원

J 은행 신용카드 연체금 2,819,000원

J 은행 분할상환 연체금 69,734,000원

R 카드 리볼빙 연체금 1,978,000원

R 신용카드 연체금 3,900,000원

J 은행 일시상환 연체금 99,578,000원

J 은행 일시상환 연체금 150,930,000원

J 은행 분할상환 연체금 501,000원

J 은행 여수시지부 주택담보대출 68,590,000원

J 은행 여수시지부 주택담보대출 55,920,000원

J 은행 신여수지점 신용대출금 99,000,000원

J 은행 신여수지점 주택외부동산 대출금 150,000,000원

S 조합 여천안산지점 신용대출금 30,000,000원

S 조합 여천안산지점 주택외부동산 대출금 150,000,000원

T 비즈니스 지급보증 담보대출금 6,946,000원

O 서울본부 신용대출금 15,030,000원

J 본부총괄 현금서비스 2,400,000원

R 현금서비스 2,738,000원

U 현금서비스 11,863,000원

V 현금서비스 5,524,000원

J 본부총괄 보증채무 309,400,000원

F 본부총괄 보증채무 122,400,000원

W 자동차금융팀 보증채무 31,823,000원

J 은행 근저당채무 780,000,000원

합계금 2,664,750,000원입니다.

(3) 소결

피고 B 의 최극재산은 328,763,000원이고, 소극재산은 2,664,750,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최극재산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를 하므로써 더욱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바. 위와 같이 피고 B 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생인 피고 C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으며, 피고 C 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피고 B 과 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악의의 수익자

이며, 피고 D는 피고 C, 피고 B와 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제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약외의 전속자라 할 것입니다.

사.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다수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아. 소결

그렇다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행사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0. 9. 22. 접수 제19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75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속자인 피고 D의 선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 C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으로)

그렇다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1. 체결된 중여계약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행사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0. 9. 22. 접수 제19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7548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7548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불능이므로 이에 대한 가액피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41,000,000원(갑 제13호증 참조)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